

#### [서식 예]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

# 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
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대표: OOO

피 고 △△광역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####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의 지위
  - 원고는 △△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 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.
- 2. 원고의 정보공개청구



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 합니다)에 의거 피고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.

#### 3.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

그러나, 피고는 20〇〇. 〇. 〇. 자로 "첫째 업무추진비 정보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, 둘째, 20〇〇. 〇. 〇. 개최된 전국 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에서대법원판결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"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(이하'이 사건 거부처분'이라 합니다)을 하였습니다.

#### 4.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

- 가. 우선 위 두 번째 이유는 법률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.
- 나. 다음으로 첫 번째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가사 원고가 청구한 정보속에 피고의 주장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정보만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청구한 정보 정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(참고로 △△광역시의 경우 업무추진비밀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, 지출결의서, 영수증 등제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열람만 허용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).

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은 대개의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에 기재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서도 반증이 됩니다.

#### 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0. O. O.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이르렀습니다.



## 입 증 방 법

1.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

1. 갑제2호증 결정통지서

## 첨부서류

1. 소장부본 1통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ㅇㅇ(인)

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 별 지

- 1. 1998, 1999년도 피고의 판공비 총액(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특수활동비 등 그 명목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 및 각 국과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) 및 기관별(자치단체의 장 및 국장 등 직책별로 분류)총액
- 2. 1998, 1999년도 기지출된 판공비의 내역(일자 · 내역 · 액수별로 정리)
- 3. 1998, 1999년도 기지출된 판공비의 지출결의서, 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
- 4. 2000년도 피고의 판공비 예산총액 및 기관별 총액. 끝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